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7. 1 선고 2015가단5005005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서울신용보증재단

피고1. A

2. B

변론 종결2015. 6. 8.

판결 선고2015. 7. 1.

주 문

1. 피고 A은 원고에게 93,190,0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. 12. 23.부터 2015. 3. 27.까지는 연 1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피고들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. 7. 1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3. 피고 B은 피고 A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. 7. 1. 접수 제2492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5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인정사실

1) 원고는 2012. 4. 12.경 피고 A과 보증한도액 135,000,000원, 보증기한 2017. 4. 12.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, 위 피고는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(이하 '신한은행'이라 한다)으로부터 150,000,000원을 변제기 2017. 4. 12.로 정하여 대출받았다.

2) 피고 A은 2014. 8. 13.경 대출금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,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. 12. 23. 신한은행에 대출원리금 94,343,523원을 대위변제하였다.

3) 원고는 2014. 12. 23. 1,153,44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에 변제충당하였고,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8조의 연 25%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, 원고가 정한 이율은 그 이행일부터 연 15%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나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잔금 93,190,083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. 12. 23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5. 3. 27.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사해행위의 성립

1) 피고 A은 그 소유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14. 7.

1. 피고 B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, 주문 제3항과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(갑 제6호증의 1, 2의 각 기재).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, 이미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, 2014. 8.

13.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, 위 피고가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. 실제로 원고가 2014. 12. 23.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피고 A은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, 원고의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

2) 피고 A의 무자력 및 피고들의 사해의사

피고 A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시가 177,000,00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, 시가 400,000,000원 상당의 성남시 중원구 C 제11층 제에이-1102호 및 제에이-1103호 등이 있었다. 그러나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무를 비롯하여,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 52,000,000원, C 제11층 제에이-1102호 및 제에이-1103호에 설정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1번 근저당채무 384,000,000원, 주식회사 다주에프엔씨에 대한 2번 근저당채무 60,000,000원,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72,250,000원, 동생인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채무 72,000,000원 등 733,000,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(갑 제6호증의 1 내지 4, 갑 제7호증, 갑 제8호증의 1, 2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).

그렇다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던 피고 A이 담보가치가 남아 있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채권자 중 피고 B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. 또한 피고들 역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됨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추정된다.

나.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

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피고 A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전지원

별지